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7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윤준병 · 이주희 · 김 윤  
서미화 · 김 현 · 박희승  
이정문 · 이춘석 · 박홍배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약물중독·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음주측정)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은 유·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자”를 “자(음주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4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

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4의2.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

10.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

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26조의2(음주측정) ① 관할관청</u>  <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u>  <u>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도</u>  <u>선사업자와 선원이 제12조제3</u>  <u>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u>  <u>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u>  <u>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u>  <u>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u>  <u>경우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u>  <u>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u></p> <p>1. <u>경찰공무원</u></p> <p>2. <u>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u>  <u>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u>  <u>람</u></p> <p>② <u>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u>  <u>(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u>  <u>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u>  <u>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u>  <u>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u>  <u>고 이를 해당 유·도선사업자</u>  <u>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u>  <u>에 불복하는 유·도선사업자</u></p>

제40조(벌칙) <신 설>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은 유·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신 설>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 이하의 벌금

③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  
-----  
-----  
-----.

1. ~ 3. (생략)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신설>

5. ~ 9.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  
-----  
-----자(음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

5. ~ 9. (현행과 같음)

10.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유·도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도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